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3. 3. 24 선고 2022가단1170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도

담당변호사 김병재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남

담당변호사 김용준

변 론 종 결 2023. 1. 11.

판 결 선 고 2023. 3. 24.

주 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2/9 지분에 관하여 2018. 9. 25.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2/9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E에 대한 대출금채권과 C에 대한 보증채권을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에 양도하였다.

F은 주식회사 E과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272649호로 위 양수금(이하 '이 사건 양수금채권'이라 한다)의 일부를 청구하였고, 위 소송은 공시송달에 의하여 진행되어 2009. 12. 30. 'F에게, 주식회사 E은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C은 주식회사 E과 연대하여 위 돈을 420,0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2010. 1. 22. 확정되었다(이하 '선행 소송'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양수금채권은 F로부터 G 주식회사를 거쳐 원고에게 순차로 양도되고 그에 따른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졌다.

다. 원고는 2019. 12.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주식회사 E과 C을 상대로 이 사건 양수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2019차전535464), 위 법원의 2019. 12. 26.자 'C은 주식회사 E과 연대하여 36,547,0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C에게 2020. 1. 16. 송달되었고, 2020. 1. 31. 확정되었다.

라. C의 부친인 H(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는데, 2018. 9. 25.경 사망하였다. 그 상속인인 배우자 피고와 자녀 I, J, C은 2018. 9. 25.경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피고는 2018. 12. 3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1)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은 하나의 논을 이루고 있고, 별지 목록 제5, 6항 기재 각 부동산은 망인과 피고가 거주하던 주택과 부지이며, 별지 목록 제7, 8항 기재 각 부동산은 하나의 밭을 이루고 있다.

마. C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9 지분(이하 ‘이 사건 상속지분’이라 한다)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양수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 10 내지 1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분할협의는 C이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상속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의한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상속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양수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C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피고가 근무하여 모은 돈으로 매수한 것인데, 단지 그 명의만을 과거의 풍습에 따라 배우자인 망인 앞으로 한 것이었고, 피고의 자녀들은 피고에게 효도하는 의미로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모두 소유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다.

피고는 C의 채무초과에 대해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이다.

설령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가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속지분의 말소만 가능하고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은 구할 수 없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F, G 주식회사로부터 C에 대한 이 사건 양수금채권을 전전양수하였고, 이 사건 양수금채권은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분할협의 이전에 성립하였으므로, 사해행위취소를 위한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피고는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양수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양수금채권은 선행 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2010. 1. 22.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민법 제165조 제1항), 이 사건 분할협의일인 2018. 9. 25.경 이 사건 양수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으로서의 ‘무자력’에는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그 소유 재산을 처분함으로써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심화시키는 경우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됨으로써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C에게 이 사건 상속지분 외에 다른 재산이 없었고, C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양수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로 인하여 C은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이 채무자인 C이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 이는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C의 사해의사와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이 법원의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증인 I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채무자가 적극적으로 자신 명의의 재산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일반적인 사해행위와 달리,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귀속을 확정시키는 행위로서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분에 대하여 상속을 받지 않는 형태로 분할협의를 하는 경우 이는 사실상 상속포기와 같은 신분 행위의 성질도 가지고 있고, 상속포기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를 사해행위로 인정하는 것은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

특히, 이 사건처럼 부부가 상당한 기간 함께 살던 중 일방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는 경우 자녀들이 남은 부모에게 상속재산 협의분할의 방식으로 그 부동산을 단독상속하게 함으로써 노후에 대비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고, 이는 우리 사회의 도덕관념에 부합하는 관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방식의 재산 이전은 배우자로서 일생 동안 망인의 반려가 되어 그와 함께 가정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서로 헌신하며 가족의 경제적 기반인 재산을 획득·유지하고 자녀들에게 양육과 지원을 계속해 온 것에 대한 기여노력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 배우자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 등 복합적인 의미가 함께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재산 이전을 사해행위로 인정하거나, 그 배우자를 악의의 수익자로 인정하는 것은 신중하여야 한다.

② 피고는 망인과 수 십 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하여 왔고, 망인과 피고는 오랜 기간 공무원 등으로 근무하였으므로, 비록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망인 명의로 취득되기는 하였으나, 피고는 망인과 함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과 유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망인의 상속인들은 위와 같이 재산의 취득과 유지에 특별히 기여한 피고의 공로를 인정하는 취지에서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

③ 망인의 상속인 전원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가 상속하는 내용의 이 사건 분할협의를 동의하였는데, C의 채권자들 때문에 나머지 상속인들까지 자신이 갖는 상속분을 포기한다는 것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④ 피고가 C의 재정상태를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는 상황에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C은 2006. 11. 15. 미국으로 출국한 이래 국내에 입국하지 않았고, 선행 소송은 공사송달에 의하여

진행되어 C조차도 선행 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지급명령이 C의 송달장소로 표시된 피고의 주소지로 2020. 1. 16. 송달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분할협의 이후의 사정이므로 그로부터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피고의 악의를 추단할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지원

별지

1)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미등기 건물이었던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나머지 부동산에 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